

#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미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6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월 28일

발 의 자 : 권미경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창원, 김혜련, 김진철,  
이신혜, 김희걸, 이승로,  
김영한, 김용석(도봉),  
김동승, 김광수(도봉),  
박준희, 장홍순, 조규영,  
이윤희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법령의 기준에 따라 확대해 출자·출연 기관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함  
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  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3명” 을 “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7명” 을 “9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>제4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3명</u> -----.</p> <p>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----- ----- ----- <u>7명</u> -----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4조(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9명</u> -----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권 미 경